

「수산업법」에 따른 어업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자료

(단위: 원)

보상금을 지급받은 자							보상금을 지급하는 자			공익사업			지급일	보상금액
상호 (법인명)	사업자등록번호 (주민등록번호)	성명 (대표자)	면허·허가 신고번호	보상 조건	보상 종류	인원	상호 (법인명)	사업자등록번호	보상업무 수탁여부	공익 사업명	상호 (법인명)	사업자등록번호		

작성방법

- 1. 보상금을 다수인 또는 공동 어업권자에게 일괄 지급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는 자에는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, 지급받은 전체인원을 인원란에 적습니다.
- 2. 면허·허가·신고 번호에는 「수산업법」 제8조·제41조 및 제47조에 따른 면허어업·허가어업·신고어업의 면허·허가·신고 번호와 종류를 적습니다.
- 3. 보상조건은 취소·정지·제한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- 4. 보상종류는 수익보상·시설보상·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- 5. 어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자가 보상업무 수탁자인 경우 보상업무 수탁여부에 '여'로 기재하시고, 공익사업 사업자(실 보상자)의 상호와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.
- 6. 공익사업명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공사명을 기재합니다.